

98년 4차 총여학생회 집행부 회의 안건지 (98년 3월 4일)

1. 보고 사항

1)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2) 각 국별 보고-3월에 하고자 하는 일도 함께 얘기해 봅시다.

2. 논의 사항

1) 1월달, 2월달 오티 결산서 공유

2) 오티 기획단의 평가 공유와 집행부 평가

3) 여성 연대회의에서 성폭력 학칙 가안이 나왔습니다. (별첨 문서 참조)

4) 지리한 예산 배정...

5) 자치단체 총회 제안 고민하기 (드물게도! 문서 발제)

6) 에포레 (자신이 받은 문서 갖고 있죠?)

7) 3월 선전-다음주에 할 수도... 그렇지만 잠시 생각을...

8) 신입생 맞이.

3. 다음주에는...

1) 자치단체 총회 실무

2) 총여학생회 10주기 행사

3) 즐거운 세미나 합식

♫ 자치단체 총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늘이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모처럼만에 문서발제를 하는군요... 푸하하.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써 봅니다.

일단 문제의식은 웬만하니 공유를 했다고 봅니다. 방학중 다섯개(비온드, 문대, 디 아더, 이과대, 동쪽)의 자치단체 테이블이 팡이 나면서부터였지요. 이런 식의 테이블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게 분명해지면서 자치단체 지원이 친한 단체 대충 돈 주는 게 아니라는 지점에 동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각 자치단체 대표들과 (동쪽은 오늘 대표를 뽑는다고 합니다.) 의논해 본 결과 총여학생회에서 자치단체 총회를 제안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것들이 얘기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 총회 준비모임의 제안

이것은 이과대 여학생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일단은 그동안 모인 자치단체들이 총여학생회와 함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짜 들어가면서 전체 총회 제안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일단 총여학생회와 자치단체들의 준비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들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2. 형식

1)총여학생회 사업 보고-너무 딱딱한가?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요. 현실적으로 총여학생회 사업은 지네끼리 돌아간다는 인상을 주기 쉽잖아요? 하고자 하는 일을 얘기하면서 자치단체들이 문제제기하고 제안하고... 대충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각 국에서 발제문은 써 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2)예산안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써 봤는데... 자치단체 지원 문제도 있고 사업 보고엔 당연히 돈문제도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자치단체들 이야기- 이 부분은 총회 준비모임에서 얘기가 되어 하겠지요. 상황 보고도 있을 수 있고 뭐 하고 싶다든가 어려운 얘기라든가 기타등등.

4)자치단체들과 총여학생회 테이블의 정식화에 대한 제안? 토론?

3. 대상

지금 여성문제 자치단체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 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 정도? 약간은 활동하는 사람 대상이겠지요?

4. 일정

3월 18일이 총학생회, 단대 학생회 해오름식이고 3월 19일이 확대운위입니다. 좀 편하게 3월 20일이 토요일이라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빠듯하면 뒤로 미룰 수도 있을 것 같고 준비모임에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총여학생회 예산 분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안합니다.

수신 :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발신 : 여/성/주/의 제10대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가 건설된지 10년이 되었고 여학생 비율이 이제 30%가 넘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여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내 여성을 위한 물질적 기반부터 성차별에 대한 인식까지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도 여학생 수가 많아지면 교세가 약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시설이나 수업 과정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총여학생회는 다른 학생회가 다루지 못하는, '여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럼에도 여학생 수의 증가와는 상관없는, 관성적인 예산 분배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산 책정에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것 외에도 연세대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위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총여학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 ▶총여학생회가 총학생회의 특별기구라는 것은 총학생회의 산하라는 의미보다 총여의 특성상 '중복 기구'라는 것
- ▶총여학생회의 예산 분배는 아무런 기준이 없는 관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학생 수 증가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방식이라는 것

관성화된 여학생회 예산 분배 방식을 깨고 보다 객관적인 방식을 제기합니다.

여학우들이 내는 학생회비 x ○% x 여학생 수

이번 기회에 총여학생회의 위상에 걸맞는 예산 기준이 마련되어야 더 이상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10대 총여학생회 1월달 결산서

작성일자 98.02.01

	항목	내용	금액	총액
수입	소득	이월금	√ 5,286,000	
	대출금상환	개인(강지)	√ 370,000	
				5,656,000
지출	대출금	문대학생회	√ 1,000,000	
		개인(장닭, 강지)	√ 430,000	
	복사비	선금	30,000	
	통신비	나우누리 12월분	27,600	
		나우누리 1월분 선금	√ 10,000	
		참세상	3,300	
	물품비	열쇠	90,000	
		컴퓨터 서적	41,000	
		탕탕이, 기타	√ 33,300	
	MT비	방값, 식비	√ 70,000	
	정기구독료	말	√ 70,000	
		여성신문	50,000	
		IF	√ 30,000	
		한겨레신문	8,000	
	기타	수수료, 섭외비	√ 2,300	
				(-1,895,500)
잔액			3,760,500	

*기타사항

√표시는 영수증 無

제 10대 총여학생회 2월달 결산서

작성일자98.2.28

	항목	내역	금액	총액
이월금				3,760,500
수입	여학생처지원금		2,000,000	
	교비지원금		400,000	
				6,160,500
지출	하드웨어구입비	컴퓨터	1,652,000	(-1,665,500)
		택배비 √	10,000	
		이체수수료	3,500	
	외부지원금	대학생신문 √	50,000	(-110,000)
		또문캠프지원-정미선민 √	60,000	
	OT	OT결산서참조	1,409,400	(-1,409,400)
	복사비	선금	30,000	(-30,000)
	통신비	하이텔 1월분	17,830	(-17,830)
	물품비	열식복사 -3개	7,500	(-37,560)
		열식복사 -1개 √	2,500	
		총무물품-팍일테잎..	10,560	
		CPU쿨러,마우스패드 √	7,000	
		사진값,디스켓 √	10,000	
	기타	오차	710	(-710)
				(-3,271,000)
잔액				2,889,500

제 10대 총여학생회 OI결산서

작성일자 98.02.27

항목	내역	금액
섭외비	김현미 - 그레이스상품권	200,000
	최은영 - 도서상품권	50,000
	황보령 - 현금 V	500,000
	좌담회팀(5명) - 도서상품권	50,000
	풍물패 - 현금 V	100,000
리플렛	B5, 1단 접지, 2000부	180,000
선전비		42,400
뒷풀이	고기집146000, 맥주61000	207,000
	2월 28일 2차선금 V	30,000
기기임대	무전기 4개	50,000
총액		1,409,400

*기타사항

V표시는 영수증 無

뒷풀이 비 중 28일 2차선금은 2월 결산에 첨부

대학사회의 성적자율권 확보를 위한 학칙(가안)

전 문

대략 25만명의 성폭력 피해자가 있어도 신고율은 고작 2%밖에 되지 않는, 세계 2위의 성폭력 국가인 한국사회를 반영이라도 하듯 한국 대학사회는 일상화된 성폭력의 공간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 공개화 되는 일은 극히 드물고, 공개화가 되더라도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제2, 3의 폭력을 감수해야 되는 현재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위험수위에 다다른 성폭력의 현실이 은폐되고 있는 것은 성기중심적인 성인식과 남성지배의 권력으로부터 기인한다. 때문에 한국사회는 성적자율권의 침해라는 관점으로 성폭력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남성의 성적 소유권인 여성의 정조-순결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성의 육체와 인격을 유린하는 성폭력의 책임이 피해여성의 무책임성의 문제로 전가되어 오히려 폭력을 당한자가 죄책감을 느끼고 사회적으로는 '정숙하지 못한 여성'으로 낙인찍히는 결과, 성폭력을 신고하지 못하고 나아가 사건을 은폐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강간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즉 성기가 삽입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의 여부가 성폭력에 대한 기준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즉, 신체적·물리적 접촉의 많고 적음에 그 기준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입장은 성기 혹은 성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맥락,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무시한 것으로서 성폭력의 영향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다르게 적용되는지를 간과한 결과이다. 또한 성기중심적인 성인식은 육체와 정신의 이분법적인 논리 속에서 피해여성이 성을 통해서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을 배제시켜 여성은 더욱 더 성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성폭력은 독립된 개인의 성에 대한 침해이다. 성을 통한 여성의 주관적 경험과 감정 그리고 육체에 대한 여성 스스로의 결정권에 대한 침해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침해에 대한 판단의 중심은 피해자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판단의 기준 또한 피해자만이 가장 명확하게 규정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사회의 성적자율권 확보를 위한 학칙은 남성중심적인 성폭력 담론을 해체하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대안적 내용으로 대학 구성원 모두가 대학사회에 동등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총 칙

제 1조 (목적)

대학은 대학구성원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근절하고, 개인의 직무나 학업 수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위협적, 적대적 또는 공격적인 직업, 학습,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성적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러한 속에서 교수진과 직원, 학생을 포함한 전 대학사회 구성인이 자유롭고 인격적인 교육과 근로분위기에서 직업 및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구성원의 성적자기 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규정, 규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절차 및 그 담당인과 기관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는 성을 매개로 대학구성원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및 기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신체적인) 행위가 가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개인의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근무(생활, 교육)환경을 형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위와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환경형 성폭력의 조항에 의거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로 규정한다.

당해 조항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대학 구성원들이 타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어떤 행위가 '객관적으로' 적대적인지 악의가 있었는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상황과 상대가 느낄 감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근거

- 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행위이거나 발언일 때
- ② 성적이거나 본질적으로 성에 기초한 행위이거나 발언일 때
- ③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에 대한 복종 또는 거부로 개인의 학업평가, 고용, 인사 또는 다른 학교 일에 대한 참여의 조건에 영향을 끼칠 때
- ④ 환경형 성폭력 일 때
: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이 개인의 능력을 비합리적으로 저해하는, 또는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학업, 근로, 생활 분위기를 조성할 때
: 차별적 행동의 빈도와 정도, 공격적인 언동이라든가 혹은 고용인의 작업에 대한 불합리한 참견들로 적대적인 환경을 구성하여 타인에게 상처주었을 때
- ⑤ 행위 또는 발언이 지속 반복될 때

제 3조 (대상)

본교 구성원으로서 교수는 외부교수 이상을, 학생은 본교 재적생울, 교직원 은 기성회직 이상을 포함하며, 외인교수 및 교환학생도 대상에 적용된다. 피해자, 가해자 중 일방이라도 이에 포함될 경우에도 본 학칙은 적용된다.

제 4조 (피해자 보호)

- ①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및 소속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성폭력 사건 징계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 추궁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③ 사건 징계과정은 물론 가해자 처벌 이후에도 징계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의 연대 책임을 적야 한다.

제 5조 (신고인)

- ① 사건에 대한 신고는 피해 당사자나 본인 이외에도 피해자가 선정한 대리인 또는 피해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제 9조에 근거하여 할 수 있다.
- ② 신고인 보호는 제 4조의 피해자 보호에 준거한다.

제 6조 (성폭력 상담실 설치)

- ① 학교는 성폭력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실장은 상담전문가, 또는 성폭력관련단체의 추천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다.
- ② 재정문제에 있어서 학교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③ 상담원 교체나 채용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7조 (상담실의 위상 및 업무)

서울시립대학교 여학생상담실에 대한 운영실태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1항 (위상)

성폭력 상담실은 학교내의 어느 기구로부터 제약을 받지않는 독자적인 위상을 가진다.

2항 (업무)

- ① 성폭력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②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병원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 ③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 요구를 하는 일
- ④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는 일
- ⑤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제 8조 (징계위원회)

각 학교의 상황에 맞추어 교수, 학생, 교직원 등이 동수의 비율을 구성하며 각각의 경우 성비포한 동율로 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징계위원회 회칙에 따르며 성공관대학교 징계위원회의 전례를 참조하여 더 고민할 지점이다. 임시의 예를 들면 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1항 (징계위원회 구성)

- ① 징계위원회는 사건접수일로부터 ()일내에 구성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교거수, 학생, 교직원, 성폭력상담소의 대표자로 구성되며 각 대표의 인원
과 성별은 동수의 비율로 구성한다.
- ③ 임기는 ()년으로 한다.

2항 (징계위원회 역할)

- ①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
- ② 피해자 보상과 치료는 제 11조 1-㉔ 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 ③ 가해자 징계회부 및 재교육
- ④ 사건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고

3항 (징계위원회 운영)

- ① 본회의 진행은 과반수 참석으로 시작하며 회의 진행은 학생측 참가인 중 1인으로 한다.
단, 불참시에는 불참사유를 운영위원회 소집전까지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정족수
미달로 결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다시 소집한다.
- ② 본회의 의결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며 소수의 의견을 존중함을 원칙으로 한다.

4항 (징계위원회 위상)

징계위원회는 학내 구성원의 동등한 참여로 구성되며 학교본부와 독립적인 위치임을 원칙으
로 한다.

제 9조 (신고와 신고기구)

제 5조에서 명시된 신고인은 서면, 전화, 통신, 직접방문 등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상담실에
신고한다.

기타 학생생활연구소 여학생부, 지도교수, 학과(부)장, 대학장, 대학총장, 교직원 대표기구,
학생대표기구, 학내 여성관련 단체, 성폭력관련상담소(외부단체) 등에 들어온 사건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경우 최종적으로 상담실에 신고되어야 한다.

제 10조 (적용시한)

적용시한은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본 학칙의 대상에 포함될 시에는 시한제한 없이 적용된
다.

제 11조 (징계내용)

일차적으로, 징계수위는 징계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에 따른다.

- ① 가해자에 대한 징계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㉑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듣는 재교육
 - ㉒ 성폭력 상담소 등의 외부단체에서 일정기간 봉사
 - ㉓ 자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명시하여 자보, 언론 등을 통해 공개사과
 - ㉔ 금전적 피해 배상

- ㉔ -1) 학생; 퇴학, 무기정학, 유기정학, 근신 등
- 2) 교수, 교직원; 해임, 직위해제, 정직, 전직, 감봉 등
- 3) 외부인; 징계위원회는 가해자가 속한 구성단체와의 접촉을 통해 징계를 요구한다.

㉕ 경고장 발송

-경고장은 공개하며, 경고장 발송 이후에도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징계수위를 높인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환경형성폭력

이 경우(학칙)에 있어 환경형성폭력이란,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이 개인의 업무 능률을 저해하거나 차별적,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생활(학업, 근무, 교육)환경을 형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앞에서보다 구체화된 이러한, 또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어떻게 완성해야 할지?

농담을 가장한 여성에 대한 평가절하, 남성의 성적인 대상으로 여성을 사고하는 것이 잠재되어있는 발언이나 행위, 옷차림·신체·성적활동에 대한 지나친 언급, 여성 배제적인 불쾌한 성적 농담,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성별 정체성에 의한 여성의 가치에 대한 폄하적인 발언, 성기중심적인 공개적 행사, 음란물을 공공장소에 부착하는 등의 행위와 같은 것들.

㉖ 기타

㉗ 다음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㉘ 보복, 부인, 불이행시

㉙ 재범일 경우

제 12조 (동조하는 자에 대한 징계)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하였을 때는 그 동조자에 대하여 제 11조에 근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